

수원지방법원 2021. 1. 8 선고 2020나34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전 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 종결 2020. 10. 30

판결선 고 2021. 1. 8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6. 10. 선고 2019가단6140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피고는 C과 사이의 2011. 7. 26.자 증여계약을 해제하고,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접수 제752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2.항과 같이 추가판단하는 부분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저j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한것이고, 피고는 C과 공모하여 C의 유일한 재산을 위장이혼으로 증여받은 것이므로,이사건 주택에 관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증여계약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청구원인은 확정된 종전 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단34792호)과 당사자및 소송물이 동일하여 종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이 법원은 종전 판결과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윤희찬판사 김선숙판사 서동민

별지